

05-04

Youio Institute
issue brief

DDA 쌀 不透明협상
:국정조사와 향후 과제



2005. 5. 18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소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 여기에 실린 내용은 HOT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목 차 】

【요약】	1
1.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	3
2. 쌀 협상 경과	5
3. 쌀 협상 주요내용	7
가. 이행 계획서 내용	7
나.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7
다.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8
4. 국정조사 관련 정치권 동향	10
5. 주요 쟁점사안	14
가. 쌀 협상 이면합의	14
나. 양자간 부가적 합의사항	16
다. 협상전략 및 과정에 대한 검증	19
라. 쌀 협상 관련 문서 공개에 관한 논란	19
마.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20
바. 기타 협상 결과	21
6. 향후 과제	24
[참고자료]	28

【요약】

- 정부의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계획서 수정안 공식 인증 결과 발표에서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등으로부터의 쌀 수입과는 별개의 부가적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를 체결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쌀 협상 이면합의 문제가 제기됨**
-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각계에서 국정 감사를 요구, 한나라당은 ‘쌀 이면협상 의혹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 야4당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5월 4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가 **국회 의결됨**
-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은 극히 정상적인 협상이었으며 통상교섭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최선의 결과였다는 입장.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기밀문서의 무제한 열람을 제한하고 기밀 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처벌 등 제제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
- 한나라당은 이면합의 여부와 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을 희생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당초 쌀 협상에서 누락되었던 인도와 이집트 쌀 구매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 또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기밀유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협상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

- 정부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12월 30일 시점에서 협상은 있었으나 별도합의는 없었으며, 부가합의 또한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
- 농민단체들은 MMA의 큰 폭 증가와 수입쌀 시판 허용으로 국내 쌀 산업 붕괴가 우려되며 각국별 이면합의 또한 해당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며 농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국회 비준 저지를 공언
- ▲이면협상 여부 ▲수입위험평가의 신속한 진행의 의미 ▲협상내용 공개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음
 - ① 정부의 주장대로 부가합의사안이 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가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쌀 협상을 위하여 타 품목을 희생시켜 협상을 진행시켜왔으며, **쌀 협상에 있어서 이면합의가 존재했다고 비난받아 마땅함**
 - ② 기한이 설정된 수입위험평가의 신속한 진행은 정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국제 기준에 의거한 통상적인 검역절차의 진행이 아닌 **협상논리에 의한 실질적 수입개방에 대한 합의임**
 - ③ 국익을 위하여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 국내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

- 정부의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 계획서 수정안 (Country Schedule) 공식 인증 결과 발표에서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이집트 등으로부터의 쌀 수입과는 별개의 부가적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를 체결했던 것이 밝혀짐
- 그 동안 정부는 쌀 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고, 지난 12월 30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누락되어 쌀 협상 이면합의 문제가 제기됨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4월 13일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면서 “협상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
- 한겨레신문·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국민일보 등 언론에서 쌀 이면합의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일제히 보도
- 농림부는 4월 13일 해명자료에서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한다는 것과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검토
-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속한 전국농민연대는 4월 13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쌀 협상 이면합의 규탄·국정조사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

- 민주노동당은 4월 14일 기자회견문에서 “최악의 쌀 협상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협상전문과 각국과의 별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
- 쌀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자 농림부는 4월 18일 보다 구체적인 쌀 협상결과를 발표함. 4월 12일 발표에 누락되었던 양자적 부가합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짐
 - 중국산 활동, 활농어 조정관세 감축 등 4월 12일 발표에서 누락된 부가합의가 다수 드러남
- 쌀 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각계에서 국정감사를 요구, 한나라당은 ‘쌀 이면협상 의혹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4당과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4월 22일 국회에 제출
- 4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 촉구 및 쌀 협상 무효 전국농민대표자대회 개최
- 5월 4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국회 의결
 - 여야는 다자협상의 경우 세부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국익을 감안, 기밀 유지를 전제로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

2. 쌀 협상 경과

- 2004년 1월 WTO에 쌀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 이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9개국 이 협상참가 의사를 표명
- 2004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미국 9차, 중국 8차 등 총 50여 차례 협상 진행
- 정부는 2004년 12월 30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하면서 주요 내용을 발표
 - ▲10년간 관세화 유예 ▲의무수입물량 7.96%까지 증량 ▲소비자 시판물량을 수입량의 30%까지 증량 등이 주요 골자
- WTO 검증
 - 2005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WTO 검증절차 진행
 - WTO사무국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3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통보된 원안대로 확정
 - 정부는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 등 후속 협의를 했다고 주장
- 4월 12일 WTO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문서 발급 및 확정 내용 발표 (WTO 검증 완료)

- 정부는 4월12일 부가합의서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
- 정부는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
(6월 임시국회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제출될 전망)
- 농민단체와 농촌출신 의원 등은 MMA의 큰 폭 증가와 수입쌀 시판 허용으로 국내 쌀 산업 붕괴가 우려되며 각국별 이면합의 또한 해당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 농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국회 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Y D I
여의도연구소

3. 쌀 협상 주요내용

가. 이행 계획서 내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 이행 후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1988년~19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
-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
 - 밥쌀용 시판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2014년까지 30% 유지

나.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 미국·중국·태국·호주 4개국 공통사항
 - 국가별 쿼타는 국제 상관행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되며 국별 쿼타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불가

○ 미국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을 지정,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매 계획에 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시킴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중국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다.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 중국: 양벧·사과·배·론간(용안)·여지(리치) 등 중국 관심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조속·신속한 추진.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면타올,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견사, 냉동낙지, 표고버섯, 활돔, 활민어, 냉동새우, 단면, 메주 등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축소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키로 합의
- 양벧(체리)은 2003년 11월에 수입위험 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 3단계까지 마무리 되어 있음. 사과·배·론간(용안)·여지(리

치)는 2004년 8월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 동·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
 -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 6개월, 오렌지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의 경우,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캐나다: 관세화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 유채조유, 유채정제유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인도·이집트: 의무수입물량(MMA)과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여의도연구소

4. 국정조사관련 주요 동향

○ 열린우리당

- 모든 협상결과를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것은 없다는 입장
- 쌀 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전문가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쌀 협상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
- 이면합의가 아니라 부가합의이며 정부는 WTO검증기간 양자간 쟁점에 대한 별도합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
- 통상협상에서는 부가합의가 가능하며, 통상교섭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
- 인도와 이집터로부터 최소시장접근 물량과 별도로 쌀을 구매키로 한 것은 ‘대북지원용’일뿐 의무수입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관련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을 포함한 4명 정도를 출석시키고 나머지는 통상전문가와 학자, 농민대표 등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
- 국익 차원에서 국제관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DDA협상 등 향후 협상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

-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 기밀문서의 무제한 열람을 제한하고 기밀 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처벌 등 제제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

○ 한나라당

- 이면합의 여부와 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을 양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춤. 정부는 쌀 이외 품목에 대한 협상국들의 개방요구를 초기부터 파악했으나 숨겨왔다고 주장
- 인도와 이집트로부터의 쌀 10만t 구매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기로 함
- 협상과정에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통상교섭본부와의 조율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조사
-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되풀이되는 한국농업 통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
-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관련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모두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특히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은 핵심증인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
- 기밀유지에 관해서 국익을 위한 큰 틀은 준수하지만 정부의 협상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

항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

○ 민주노동당

- 쌀 협상에서 쌀 이외의 다른 품목까지 양보한 ‘이면합의’의혹에 대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신속한 진행은 중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사실상 수입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
-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통상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조사위원에 통상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
- 관련 문서 공개 및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 조사위원회 위원인 강기갑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쌀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을 위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조계획서의 수정을 요구.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힘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2005. 5. 4.

- 5월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쌀 협상 국정조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의 목적: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과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
 - 조사범위: 쌀 협상 전 과정
 - 조사방법: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열람), 기관방문조사, 증인 참고인 심문 등
 - 조사대상 기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 조사기간: 2005. 5. 12 ~ 2005. 6. 15. (청문회는 6월 13일, 14일 양일간 실시)
 - 기타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위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5. 주요 쟁점사안

가. 쌀 협상 이면협상·이면합의

- 그 동안 정부는 쌀 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고, 지난 12월 30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누락
 -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 협상 추진 상황보고에서 당시 농림부 장관은 “쌀 이외의 품목을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적은 없다”고 발언
 - 외교통상부 DDA대사의 명의로 발간된 “쌀 관세화 관련협상 주요내용”(2004년 12월 17일 쌀협상 국민대토론회 관련자료)에 “기타 양자현안 등으로 농수산물의 검사·검역 등을 포함한 양자현안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쌀 이외의 양자현안은 쌀 협상과 분리하여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
- 작년 12월 30일 쌀 협상결과 발표 당시 쌀 이외의 부문에 대한 협상·합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쌀 협상과 연계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숨겨왔음
 - 정부는 12월 30일까지는 양자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부 보도자료에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 쌀 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면에서 쌀 협상을 다른 품목과 연계해서 협상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 4월 12일 정부의 쌀 협상 최종결과 보고에서 ‘부가적 합의사안’이 다수 발표됨. 또한 4월 18일 재발표된 자료에서 12일 발표 자료에서 누락된 부가합의 사항이 다수 드러나 비난을 받음
 - 협상에 있어서 양자현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12월 30일 농림부가 발표는 쌀만에 초점을 맞추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쌀 이외의 많은 부가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음
- 부가합의의 파급효과가 고려되었다면 해당 부문에 대한 사전 평가와 대책이 우선되어야 했음
 - 쌀 농가에 대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작년 12월 30일 쌀 협상결과와 동시에 발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가합의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피해대책은 발표되지 않음
- 정부의 주장대로 부가합의사안이 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면 본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가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었음
 - 쌀 협상을 위하여 타 품목을 연계시켜 협상을 진행시켜왔으며, 쌀 협상에 있어서 이면합의가 존재했다고 비난받아 마땅함

☞ 쌀 협상과 연관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국내 비난여론을 감안, 숨겨온 것임

○ 미발표 추가 이면합의 존재여부

-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허용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의 미발표 이면합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국정 감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허용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상, 검역절차의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 양자간 부가적 합의사항

1) 수입개방에 관한 논란

○ 중국, 아르헨티나와 합의한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대한 조속한 진행과 시행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 수입개방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수입위험평가의 진행과 수입개방은 별도”라고 주장

-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검역이 아닌 부가협상에 의한 수입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협상 원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수입허용여부는 타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 결정할 사항이 아님!**

2) 협상결과에 대한 비판

- 의무수입물량(MMA)이 큰 폭으로 증가(실질적으로 8.18%)되고 미국·중국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연례양자협의 개최 보장, 다수의 부가적 이면 합의 등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협상결과가 다수 존재
- 정부측 주장대로 부가적 사항이 쌀 협상과 관련이 없었다면 부가협정이 이루어진 연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대책과 협상의 명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축·수산물 추가개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개방협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상에 있어서의 명분 또한 분명하지 않음
 - 사과, 배는 벼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로 고부가가치 농업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우리로서는 보다 전략적인 보호가 필요한 작목임
 - 농업을 포함한 시장개방은 역행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나 개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先평가·대책-後개방」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3) 인도와 이집트 쌀 구매

-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연간 9,121톤 우선구매하기로 함
- 정부는 ‘대북원조용’일뿐 의무수입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 또한 쌀 유예기간이 끝나면 구입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국내 쌀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인도·이집트 쌀 구매는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만일 인도·이집트 쌀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과잉재고상태인 국내 쌀을 원조용으로 이용해야 할 상황임. 쌀 재고가 1천만석을 넘어서고 재고관리에 3천여억원이 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지원용 쌀 별도 구매는 이중 부담임
- 또한, 쌀 유예기간 이후에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이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인도·이집트 쌀 구매는 MMA수입물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인도와 이집트 쌀 구매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안일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한 문제임**

다. 협상전략 및 과정에 대한 검증

- 관세화 유예에만 집착한 정부입장이 협상력을 떨어뜨려 많은 부가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됨
- 2004년 내 협상 미타결시 자동관세화론을 취하였다가 변경한 경위, 2004년 말 협상 시한 연장을 검토하였다가 철회한 경위 등을 규명하고 무역개방과 관련해 ‘대외협상’에 비해 훨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내협상’에 있어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쌀 협상 부가합의에서 쌀 이외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연계되어 있음. 정부는 연계의 불가피성과 예상 피해액,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음

라. 쌀 협상 관련 문서 공개에 관한 논란

- 협상 원문과 부가합의서는 상대국들과의 관계와 앞으로 있을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전제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에게 열람됨
- 쌀 협상 양허표와 양자간 합의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요 원문이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협상과정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각종 보고문건, 협상 속기록, 출장 복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외교문서는 공개대상이 됨

-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협상관련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요구가 수용되어 국정조사기간 중 협상 원문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전망

- 국익을 위하여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문 공개여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 국내 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와 손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 정부는 4월 12일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임

- 비준동의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

-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과정이라는 이유로, 협상 후에는 국익과 국제관계속에서의 신의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비준을 강요하는 형태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음

-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 측 주장

대로 어쩔 수 없이 비준을 해야 한다면 국제 협상에 대한 논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이번 쌀 협상에 있어서도 각종 설명회와 위원회에서의 질의 등이 있었으나, 정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거짓 정보를 포함한 ‘장소 모면식의 발언’이 계속되어왔음

- 해당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외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협상을 실질적으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바. 기타 협상 결과

1) 2015년 쌀 전면 개방에 대한 합의

- 현 농업협정에는 대한민국 쌀은 전면 수입 개방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쌀 협상에서는 기한을 2014년으로 명시하였음. 특히, 이번에는 연장을 위한 협상을 규정하지 않아, 더 이상 더 이상 쌀 개방 예외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졌음

☞ 2015년에는 쌀 전면개방

2) 수입쌀 소비자 판매

-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나 밥쌀용 시

관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2014년까지 30% 유지하게 됨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말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됨 (실질적으로는 9월정도 시판될 것으로 예상)
- 쌀값 계절진폭이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쌀 소비자 판매가 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국내산 쌀의 고품질화와 쌀 유통구조의 투명화·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용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원조용과 사료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국내 쌀의 고품질화와 주식용으로 소비된 수입쌀에 상응하는 국내산 쌀을 용도 전환하는 등의 방안으로 국내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수입쌀 시판에 대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2014년 의무적 시판 물량은 12만 2,610톤으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물량의 14%에 해당됨. 해당 수입쌀은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조기 방출하여야 함
- 수입정부미와 국산 정부미는 동일한 “정부관리양곡”이나, 유통 면에서 수입 정부미를 국산 정부미보다 더 우대하는 역차별 또한 우려되고 있음

3) 이행을 위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하도록 미국과 합의한 사항은 국내 쌀 역차별의 여지를 남김

- 미국, 중국과의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수입개방 확대 등 통상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쌀 협상 이행계획서에 이행 후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를 명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과의 별도 연례 협의는 지속적인 수입개방 확대 압력의 여지를 남김

- ☞ **국내 쌀 역차별, 통상압력에 대한 여지 등의 문제점을 남김**

여의도연구소

6. 향후 과제

- 이번 DDA쌀 협상을 통하여 정부의 밀실험상이 해당산업 종사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이러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상협약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통상협상에 대하여 비공개협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조직 육성이 검토되어야 함
- 부가적 합의에 대한 검증, 협상문서 전문 공개여부를 포함한 여러 쟁점사안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 ▲협상과정에서의 문제 지적 ▲앞으로의 대책마련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세화에 대한 실익을 냉정히 재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협상 여부나 개방 수준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양하고 어떠한 영향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가를 집중 추궁하고 제시되는 국내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 정부는 '쌀 이면협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외교적 협상이었고 관세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외교적 합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는 등의 방어 논리가 예상됨
- DDA뿐 아니라 FTA를 통하여 앞으로도 농업을 포함한 큰 폭의 시

장개방이 예상되는 바, 개방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에는 분명하나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국정감사에서는 「先평가·대책-後개방」의 대원칙을 내세우고 이번 이면협상이 이러한 원칙에 따른 협상이었는가에 대하여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
- 이면합의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입쌀 소비자 판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한 발 앞선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
 - 수입쌀의 국산 쌀 둔갑과 국산 쌀과 혼합되어 판매됨으로써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과 불신이 생길 소지가 있음. 원산지, 품질, 규격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
 - 수입쌀에 대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고, 밥쌀용 쌀 시판에 상당하는 국내 쌀의 용도 변환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
- 추가개방으로 인한 이탈농 발생과 낙후지역의 확대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요구
 - 높은 국경장벽을 통한 소비자 부담형 농업보호에서 납세자 부담형 농업보호하에서의 시장지향적 농업체제로의 전환이 시대적 흐름임
 - WTO 체제하에서 가격지지 정책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소비확대·식품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지원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농업 직불제,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등으로 농가소득의 보전과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발굴을 유도하고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재해보험제도 도입 또한 검토되어야 함
- 검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식생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수입농산물의 검역 및 통관 절차의 개선·강화를 위해 검역 기술의 선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엄밀한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
 - 품질인증제도와 원산지 표시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를 포함하는 표시제도의 강화 및 확충

여의도연구소

[참고]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시사점

□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이후 일본은 5년, 대만은 1년을 경과하고 있음. 양국 모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에서 완전개방으로 전환하는 등 유사한 시장개방 과정을 거침

-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의무수입물량은 전량 수입되고 있지만, 관세에 의한 수입은 관세화 초기 단계의 고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저율관세쿼터(TRQ) 수입쌀이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TRQ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영향을 줄이고 있는 반면,
- 대만은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도의 8%인 TRQ 물량이 2003년 기준으로 12.6%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일본, 호주, 미국 등 고급 쌀이 시장에 시판됨에 따라 산지에서 소비지 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TRQ 관리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은 수입단계에서 수입국 지정 수입 방식을 통해 국별, 용도별로 물량을 지정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단계에서 일본은 가공용, 원조용, 사료용 등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적은 용도로 판매하면서 필요에 따라 장기 보유도 하는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대만은 TRQ 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이 시장에 유입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시장개방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수입쌀은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있고, 적절한 기한 내에 시중에 방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 12)

《참고자료》

제 253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2005. 4. 18

농 립 부

목 차

1. 쌀 협상 경과	30
2. 이행계획서 내용	31
3.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32
4.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33
5. 향후 계획	36

<참고> 이행계획서 수정본

1. 쌀 협상 경과

□ 쌀 협상 추진

- 쌀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후 9개국*이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04.4.21)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 '04. 5월부터 1차협상을 시작하여 미국 9차, 중국 8차 등 총 50여 차례 협상 진행

□ 쌀 협상 결과 WTO 통보 및 발표('04.12.30)

-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사무국에 통보
- 통보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 에서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임을 발표

□ WTO 검증('05.1.6 ~ 4.6)

- '05.1.6 WTO사무국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3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통보된 원안대로 확정
- 검증기간 동안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문 또는 서한 교환 등 후속 협의도 마무리

□ WTO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문서 발급 및 확정 내용 발표('05.4.12)

- 확정된 이행계획서 내용과 함께 검증기간 중 후속협의를 끝낸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2. 이행계획서 내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

○ 이행후 5년차인 '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관세화 전환시의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 적용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 적용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

○ MMA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 배정

※ 국가별 쿼타: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 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

○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

3.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가. 미국·중국·태국·호주 4개국 공통사항

- 국가별 쿼타는 국제 상관행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
- 국내 수요 및 과거 교역실적을 고려하여 입찰 실시
-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가지며 3회 유찰 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
- 국별 쿼타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불가

나. 미 국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조달청·유통공사 등)을 지정
-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매계획에 공매 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 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수입쌀 입찰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을 적용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다. 중 국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장립종 수입쌀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라. 호 주

- 수입쌀 운송선박의 한국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01년에 이미 폐지되었음을 확인
- '07년 이후 연 1회 이상 상반기 입찰 실시
-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관련 정보 보호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4.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가. 중 국

- '03. 11월 접수하여 총 8단계중 3단계까지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위협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 '04. 8월 접수된 사과·배·롱간(용안)·여지(리치)에 대해서는 4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양벚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
- 이미 양국간 논의가 진행중인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하고, 정식 출범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검역 당국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중국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TRQ품목 입찰절차 관련 사항은 한중 경제공동위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중국측 관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8년이후 대상품목 축소와 세율인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관심품목에 대해 '02년, '04년, '05년 반영 내역을 명기

<'02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먼타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04년 반영 내역>

- 제외 3개 품목 : 면직물, 견직물, 견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05년 반영 내역>

- 제외 1개 품목 : 냉동낙지
- 감축 7개 품목 :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

- 향후 한·중 통상협력 증진의 필요와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양자 채널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 품목 축소·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

나. 아르헨티나

- 검역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 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 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 전문가 상호 방문 추진
- ※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05. 1월 작성되었으나 '05. 4월 현재 3개 품목 모두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 아르헨티나측 검역전문가 2인의 방문은 기 완료('05.3.18 ~ 3.26)

다. 캐 나 다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 수준 유지 노력
- 유채유박(0%), 유채 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10%→ 8%), 유채정제유(30%→10%)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 유채유 대체품목인 대두조유와 대두정제유의 실행관세율은 모두 5.4%임
- 상기 사항은 DDA협상결과와 관계없이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라. 인 도·이집트

-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5. 향후 추진 계획

- 금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정부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



<참고 I >

SCHEDULE LX REPUBLIC OF KOREA
PART I: MOST-FAVOURED-NATION TARIFF
SECTION I: Agricultural Products
SECTION I-B: Tariff Quota

1. The Minimum Market Access (MMA) specified in Columns 3 and 4 for the period of 2005/2014 shall increase in equal annual instalments.

2. Review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Special treatment for rice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10 years until 2014. In the 5th year, there shall be a multilateral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3. Allocation of the MMA

3.1 Existing MMA volume of 205,228 metric tons, milled basis, shall be allocated to the following Members based on the historical trade flows from 2001 to 2003 (*Country-Specific Quotas (CSQs)*).

- China	116,159 metric tons, milled basis
- United States	50,076 metric tons, milled basis
- Thailand	29,963 metric tons, milled basis
- Australia	9,030 metric tons, milled basis

3.2 Future growth in the MMA volume shall be administered on an MFN basis (global quota). A limited portion may be allocated for domestic needs for specialty rice.

3.3 In the case of the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entire volume of the CSQs shall be subject to global quota on an MFN basis.

4.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4.1 At the beginning of any year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special treatment (2005/2014), the Republic of Korea may ceas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In such a case,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subject to ordinary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4.2 The tariff rate for the year 2005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tariff equivalent,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escrib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pplied until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In case the special treatment ceases to app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tariff rate shall be modified, reflecting such an outcome.

4.3 After the 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maintain the MMA volume already in effect at such time. In case such volume is not equivalent to the volum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outcome of the DDA negotiations, the greater of the two shall be applied.

5. Import Mark-up

The Republic of Korea may impose import mark-up according to 'Note 4' of the UR Country Schedule.

6. Utilization of Imported Rice

6.1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rice imported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s shall have access to domestic marketing channels for table and non-table rice.

6.2 The volume of imported rice distributed into the Korean market for table use (hereinafter "table rice") shall be phased in from no less than 10 percent to no less than 30 percent of the total MMA volume by the sixth year of implementation period, in equal increments over the six year period. Table rice including quality rice shall have access to normal marketing channels, wholesalers, distributors and end users. Table rice shall be marketed in a timely fashion so that its quality for table use is not adversely affected by the storage time.

6.3 Separate from and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able rice as stipulated above, volume of imported rice distributed into the Korean market for non-table use shall reflect recent patterns of distribution.

Description of products	Tariff item number(s)	Initial quota quantity and in-quota tariff rate	Final quota quantity and in-quota tariff rate	Implementation period from/to	Initial negotiating right	Other terms and conditions
1	2	3	4	5	6	7
Rice in the husk(paddy or rough)	1006-10-0000 * ST-Annex 5	51,307 M/T (5%)	102,614 M/T (5%)	1995/1999		*Nonglutinous milled rice basis* Note 4
Rice(Hulled / Nonglutinous)	1006-20-1000 * ST-Annex 5	102,614 M/T (5%)	205,228 M/T (5%)	2000/2004		
Rice (Hulled /Glutinous)	1006-20-2000 * ST-Annex 5	225,575 M/T (5%)	408,700 M/T (5%)	2005/2014		
Rice(Milled or semi-milled /Non-glutinous)	1006-30-1000 * ST-Annex 5					
Rice(Milled or semi-milled /Glutinous)	1006-30-2000 * ST-Annex 5					
Rice(Broken)	1006-40-0000 * ST-Annex 5					
Rice flour	1102-30-0000 * ST-Annex 5					
Rice(Groats and meal)	1103-19-3000 * ST-Annex 5					
Rice(Pellets)	1103-20-2000 * ST-Annex 5					
Rice(Rolled or flaked grains)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1104-19-1000 * ST-Annex 5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1806-90-2290 * ST-Annex 5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rice flour)	1806-90-2999 * ST-Annex 5					
Mixes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ther)	1901-20-9000 * ST-Annex 5					
Other food preparations (Of rice flour)	1901-90-9091 * ST-Annex 5					
Other food preparations (Other)	1901-90-9099 * ST-Annex 5					

<참고>

이행계획서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절 : 관세할당

1. 제3열 및 제4열에 명시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2. 쌀에 대한 특별대우의 검토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5,228톤(정곡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 중국 116,159톤 (정곡기준)
- 미국 50,076톤 (정곡기준)
- 태국 29,963톤 (정곡기준)
- 호주 9,030톤 (정곡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위해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4. 이행기간중 특별대우의 중단

4.1 대한민국은 특별대우의 이행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 각 년도의 개시시기에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 4.2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세율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 4.3 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물량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물량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 이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적용된다.

5. 수입부과금

대한민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Note 4’에 따라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수입쌀의 이용

- 6.1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된 쌀이 밥쌀용 및 그 외 용도로 국내 유통경로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된다.
- 6.2 밥쌀용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으로 유통되는 수입쌀(이하 “밥쌀용 쌀”)의 물량은 이행기간의 제6년차까지 6년 동안 총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10퍼센트 이상으로부터 30퍼센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균등하게 증가한다. 고품질 쌀을 포함하여 밥쌀용 쌀은 통상의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밥쌀용 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내에 유통된다.
- 6.3 상기 규정된 밥쌀용쌀의 이용과는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밥쌀용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수입쌀 물량은 최근의 유통형태를 반영한다.

품 목 명	세 번	초기할당물 량 및 할당물량내 관세율	최종 할당물량 및 할당물량내 관세율	이행기간 (부터/까지)	초기 협상권	기타조건
1	2	3	4	5	6	7
벼	1006-10-0000 *ST-Annex5	51,307톤 (5%)	102,614 톤 (5%)	1995/1999		* 맷쌀 기준 * Note 4
메현미	1006-20-1000 *ST-Annex5	102,614 톤 (5%)	205,228 톤 (5%)	2000/2004		
찰현미	1006-20-2000 *ST-Annex5	225,575 톤 (5%)	408,700 톤 (5%)	2005/2014		
맷쌀	1006-30-1000 *ST-Annex5					
찹쌀	1006-30-2000 *ST-Annex5					
쇄미	1006-40-0000 *ST-Annex5					
쌀가루	1102-30-0000 *ST-Annex5					
쌀의 분쇄물 및 조분	1103-19-3000 *ST-Annex5					
쌀의 펠리트	1103-20-2000 *ST-Annex5					
쌀의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 의 것	1104-19-1000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 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 가루의 것제외)	1806-90-2290 *ST-Annex5					
기타조제식료품 (오트밀의 것 및 보 리가루의 것은제 외)	1806-90-2999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 용 혼합물 및 가루 반죽중 쌀가루의 것	1901-20-1000 *ST-Annex5					
베이커리제품 제조 용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901-20-9000 *ST-Annex5					
기타조제식료품중 쌀가루의 것	1901-90-9091 *ST-Annex5					
기타 조제식료품 (쌀가루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901-90-9099 *ST-Annex5					

이슈브리프 2005-04

DDA 쌀 不透明협상 : 국정조사와 향후 과제

2005년 05월 18일 인쇄

2005년 05월 18일 발행

발행인 윤건영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기계회관 신관 3층
